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드림케어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다.
- 3) 단, 새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기타 의료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3) 기타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비용을 전액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다.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